

순천대학교 어린이집 운영 규정

제정 2017. 3. 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제 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순천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 어린이집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만0세~만5세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교육, 건강관리,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및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 이 대학교 어린이집의 명칭은 순천대학교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소재지) 어린이집은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255 순천대학교 내에 둔다.

제5조(기능)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유아 보육
2. 영유아 보육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
3. 보육 아동의 발달 진단 및 상담 지원
4. 영유아 보육관련 부모교육 및 지역사회와의 교류
5. 그 밖의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

제6조(운영) ① 어린이집의 관리부서는 사무국 총무과로 한다.

② 총장은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 운영자 선정 평가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위탁 운영 법인·단체 대표 또는 개인 및 원장의 전문성 등을 포함하여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위탁 운영자를 선정한다.

제7조(감사 및 운영평가) ① 어린이집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감사 또는 업무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하여 연 1회 운영평가를 실시한다.

③ 총장은 감사 및 운영평가 결과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라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경우 필요한 보완조치를 하게 하거나 위탁운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보육교직원의 구성 및 임면) ① 어린이집에는 시설의 장(이하“원장”이라 한다), 주임보육교사, 보육교사 등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직원을 둔다.

② 보육교직원은 총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의 경우에는 위탁 운영 법인·단체 대표 또는 개인이 보육교직원을 임면한다.

③ 주임보육교사는 보육교사 중에서 임명한다.

④ 보육교직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금·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의 체결에 따른다. 다만, 위탁의 경우에는 위탁 운영 법인·단체 대표 또는 개인이 보육교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9조(직무) ①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

② 주임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① 어린이집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라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장, 이 대학교 총무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교원위원 1명, 외부위원 1명, 보육교사 대표 1명, 학부모대표 5명으로 총 10명 이내로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 매년 3월 말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부모위원은 자녀가 퇴소할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④ 위원장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원장이 지명한 보육교사로 한다.

⑥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간 4회(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며 학부모대상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학부모 요청시 열람 및 공개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2. 영유아의 건강 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아동 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4. 보육시간 보육대상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5. 보육 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보육료 외의 필요 경비를 받는 경우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보육정원)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은 76명으로 하고, 보육시설 면적의 증감에 따라 관할 시장의 승인을 받아 증감할 수 있다.

제13조(보육대상 및 입소자격) ① 보육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② 어린이집의 입소자격 및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1순위 : 이 대학교 교직원(산학협력단 직원, 시간강사, 계약직원 등 포함) 자녀
2. 2순위 : 이 대학교 재학생의 자녀
3. 3순위 : 정원의 여석이 있을 경우 유관기관 및 순천지역 거주 시민의 자녀를 입소시키되, 제1호 구성원 자녀 입소자 수를 초과 할 수 없다.

③ 전출, 퇴직, 졸업 등으로 보호자의 신분변동이 발생 시 당해 자녀는 보호자의 신분변동이 발생한 그 학기까지 재소할 수 있다.

제14조(입소 시기) 입소 시기는 매년 3월 초로 하고, 결원이 발생하면 수시로 입소할 수 있다.

제15조(보육내용과 시간) ① 보육내용은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호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② 보육시간은 1일 12시간(07:30~19:30)을 기준으로 하되 조정 할 수 있다.

제16조(보육과정) ① 어린이집의 보육과정은 영아반, 유아반을 둘 수 있으며, 각 과정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아반은 만0세~만2세, 유아반은 만3세~만5세로 구성한다.

제17조(보육료) 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및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8조(제정) ① 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보육료, 이 대학교 지원금, 고용보험기금보조금, 후원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② 어린이집의 예산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독자적으로 운영한다.

③ 보육교직원의 보수는 당해 연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른다.

④ 어린이집의 회계연도는 대학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19조(보칙) ①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② 그 밖에 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17. 3.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추진된 모든 업무는 이 규정의 절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